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5
------------	----

제출년월일 : 1998. 1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정한 지방공무원법 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 및 휴직제도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정년연장조항 삭제
- 휴직에 따른 직권면직규정 보완
- 휴직기간 및 효력에 관한 규정 신설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 조문 대조표 : 별첨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4항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호중 “6월이상” 을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 으로 한다.

제11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까지로 한다.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부 칙

-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 공무원중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1998. 9. 19, 법률 제5568호) 개정전의 제6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와 1999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 ③(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 ④(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신체·정신상의 장애(공무상 질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유로 직권면직 예정일자를 정하여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